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신동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7. 16.

발의자 : 신동근 · 이정문 · 이상현

김영배 · 김윤덕 · 유정주

조승래 · 박찬대 · 장경태

김종민 · 고용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,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,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 등 국민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구강건강 관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.

그런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현행법상 구강건강 관련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.

아동기에 적절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가 이루어진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구강건강을 유지·증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,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 등 OECD 국가들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치과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

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,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제1항제4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第18條(口腔健康事業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 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 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4. (생 략) ② (생 략)</p>	<p>第18條(口腔健康事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